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7
----------	----

제출년월일 : 1999. 6. 2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됨으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3. 관계법령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나.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8호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